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시설대관 규정

제정: 2009.07.09.

개정: 2014.03.20.

개정: 2018.01.03.

개정: 2023.02.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장비를 한국문화예술의 보급과 한·중 문화교류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원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한국문화예술의 진흥·발전과 한·중 문화교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대관 또는 대여 할 수 있는 문화원의 시설과 부대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관할 수 있는 문화원 시설
 - 가. 강의실(2, 3층 강의실)
 - 나. 전시실(3층 전시실)
 - 다. 공연공간(3층 아리랑홀)
2. 대여할 수 있는 물품(문화원 내에서만 사용가능)
 - 가. 마이크, 빔 프로젝터 등 행사에 관련된 부대장비
 - 나. 장구, 북, 가야금 등 행사에 관련된 전통악기
 - 다. 한복, 한국전통 장신구 등 행사에 관련된 물품

제3조(대관 기간 및 시간)

1. 반입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한 대관 기간은 문화원 내부행사와 다른 단체의 이용을 위해 연속 3일 이내 원칙으로 하며 전시 대관 기간은 1~2주 이내 원칙으로 한다.
2. 각 시설 및 부대물품의 대관 가능일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문화원 휴무일을 제외한 화요일~토요일 9:00~18:00(반입 및 철수 포함)
 - 나. 대관 가능 기간 매년 3월~12월10일

제4조(대관조건) 대관 신청자는 문화원의 자체 기획전시·공연·교육·행사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문화원의 시설을 대관 할 수 있다.

1. 중국 내 한국문화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2. 한·중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양국 문화교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후원하는 행사
5. 현지에 진출한 한국 예술인 또는 기업이 진행 하는 한·중 문화 교류행사 및 교민 대상 문화행사
6. 기타 한국정부 또는 문화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대관신청) 문화원 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신청인(또는 단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와 신청인(또는 단체)의 활동 경력 및 기타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 성명, 메일, 전화번호, 팩스 등)
2. 대관하고자 하는 문화원 시설 및 부대물품
3. 물품반입, 행사장 설치, 철수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한 희망 대관시간
4. 대관 행사내용(행사명칭, 주요내용, 개최목적, 반입품의 종류 및 수량·규격, 참여인원 수 등)
5. 공연자(또는 전시자)의 공연·전시 경력 등
6. 행사물품과 집기 목록 및 반입, 설치, 철거시간
7. 냉난방시설 사용신청 여부
8. 수익사업 여부

제6조(대관승인) 문화원은 대관신청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같이 대관을 승인한다.

1. 문화원은 본 규정 제5조에 기재된 대관 신청자료를 신청자(또는 단체)로 부터 전부 제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관 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자(또는 단체)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문화원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대조건을 달 수 있다.
3. 문화원과 대관신청자간의 대관 관련 협의는 대관신청서 및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시설대관 규정>(본 규정)과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시설대관신청자 의무사항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입각한 대관 협의로 대신한다.

제7조(대관 거부 및 승인 취소와 중지 등) 문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거부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2. 특정종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 외)
3. 개인 기업체, 단체 등의 기념행사 또는 시상식과 같은 성격의 행사
4. 문화원 시설, 설비의 관리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문화원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행사

7. 어린이가 참가, 참관하는 행사로 문화원이 요구하는 소방·안전요원을 확보하지 않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행사
8. 개인전, 개인 공연 등
9.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10.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 중지 또는 취소를 받은 자
11. 제출한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진행할 경우 또는 제4조의 대관조건을 위반할 경우
12. 천지재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및 부대물품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8조(대관내용 변경) 문화원과 대관자는 대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통지를 받은 자가 행사일정 또는 주요행사내용을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화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업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관자와 협의하여 대관의 기간이나 사용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대관료)

1. 무상 대관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문화원 행정직원 정상 출근 시간 외에 문화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대관 관리 및 협조에 필요한 문화원 직원의 업무 시간외 인건비(지원인력 시간외 근무 수당 등)를 대관자가 부과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 추가비용(주차비, 냉난방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대관자가 별도 협의하여 책정 후, 대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0조(냉난방시설 사용료) 냉난방시설 사용료의 결정·납부·면제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문화원 입주 건물에서 냉난방 시설 가동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시간(중국법정휴일과 문화원 개방시간 외의 시간)에 대관자가 문화원 시설을 대관하여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별도로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문화원 건물관리업체(物业)에 별도로 냉난방신청을 하여 발생하는 실비며, 건물관리업체와 대관자 간 직접 정산을 한다.
3. 단,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실비정산이므로 건물관리업체에서 부과하는 냉난방시설 사용료 규정에 따라 변동하여 적용된다.
4. 냉난방시설의 사용여부와 대관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관신청서에 냉난방시설 신청 여부 및 사용시간 등을 기재한다.

제11조(대관자의 의무 및 책임)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문화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지켜야 하는 의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는 진행 불가하다.
2. 대관자는 문화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대관자는 행사 진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문화원 시설 및 장비의 사용 계획은 사전에 문화원 담당자와 협의·결정 하여야 한다
4. 대관 진행시 벽면에 붙이는 모든 행위(포스터, 네임택 등)는 문화원과 사전에 협의 하며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5.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부분은 진행 불가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행위는 진행 불가하다.
6. 대관자는 문화원이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대관 전 대관신청자 의무사항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사인 및 제출하여야 한다.
7. 대관자는 문화원장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때, 즉시 응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8. 대관자는 행사 종료 시 해당시설을 원상 복구(쓰레기 수거 및 반출 포함)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는 대관자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9.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0. 대관자가 대관기간에 문화원 시설을 훼손하거나 문화원 물품의 파손 또는 소실을 초래할 경우, 해당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 안전관리)

1. 대관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만 반입 가능하다.
2. 문화원은 문화원 시설 및 장비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인화성 물질(휘발유, 시너, 가스, 등)과 담뱃불, 성냥,ライター, 촛불, 화약류 등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문화원 입주 건물 규정에 따라 금연을 준수 한다. 흡연 적발 시 건물 보안협회에서 책임과 벌금을 요구 할 경우 대관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4. 대관자는 대관행사 진행시 소방·안전요원을 비치하여야하고, 소방·안전요원 미비치 또는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소방·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부 칙 <2023.02.17.>

이 규정은 문화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23.02.17.)부터 시행한다.